
V. 인적사고 보상제도의 다양화 방안

1. 정기금지급 선호도 조사

보험연구원의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일시금을 선호하는 비중은 60.9%, 정기금을 선호하는 비중은 39.1%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는 이미 정기금지급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 2007년 시행한 AIG Survey Report의 결과와 유사하다.

〈표 V-1〉 일시금 vs. 정기금의 선호 비율 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응답자 비율
일시금	659	60.9
정기금	423	39.1
계	1,082	100.0

이 Report에 따르면, 미국인 1,000명(80%는 인적사고와 관련이 없고, 나머지 20%는 인적사고 당사자 이거나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를 둔 가장이 본인의 운전사고로 장해를 입게 된 경우²⁶⁾ 정기금의 활용 의향을 조사한 결과, 65%의 응답자가 일시금을 선택하고, 35%가 구조화지급방식을 선택하였다.²⁷⁾

26) 당신은 35세이고,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풀타임 직업을 가지고 있다.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당신의 차량은 SUV차량과 추돌사고가 났다. SUV차량의 운전자는 경미한 상해를 입었으나, 당신은 큰 상해를 입었다. 인근 병원에 후송되어 생명을 구했으나,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몇 달간의 재활을 거쳐 집으로 돌아왔고, 재활치료를 통해 언젠가 직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소송 몇 년 후에 법원은 SUV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했고, 당신에게 75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여기서 당신은 보상금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응답자가 일시금을 선택한 이유는 개인의 재정적 의사결정과 계획이 가능하기 때문(49%), 부채를 갚을 수 있다는 점(26%), 연금에 종속되지 않고, 융통성이 있음(16%), 재무적 독립성을 보장(6%), 정부의 보조로 생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2%), 기타사유(1%) 순이었다.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투자용도(43.2%)와 목돈마련(28.8%)이 일시금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표 V-2〉 일시금 선호 이유 조사 결과

(단위: %)

선호 이유	목돈마련	수령불편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부족	투자용도
응답자 수 비율	28.8	9.9	18.1	43.2

그러나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부족을 일시금 선호 응답자 중 약 18%가 선택했다는 점은 우리나라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보험회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보험금 지급불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보호제도”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보호제도는 의무가입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의 청산 또는 파산 시 예금자보호법상 보장한도인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보험 피해자의 피해액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들이 사후적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보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한 자동차보험계약이며(법인을 계약자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은 제외), 지급보장 대상은 피해자가 입은 신체손해(재물손해는 제외)로 하고, 보장한도는 개별법령의 보장

27) 일시금과 구조화지급방식에 대한 아무런 사전교육 없이 선택하도록 하였다.

한도에서 예금자보호법상의 보장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보장한다. 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한 자동차보험계약의 경우에는 1억 원 범위 내에서 지급불능 금액의 80%를 보장한다.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정기금을 선호하는 이유로 74%가 생계비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자녀교육비 마련(14.2%), 가족의 불화 우려(7.8%), 갈취 및 탕진의 우려(4.0%)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 경우 정기금 선호 이유가 생계비와 자녀교육비 마련인 것을 보더라도 정기금제도의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표 V-3〉 정기금 선호 이유 조사 결과

(단위: %)

선호 이유	생계비	자녀교육비	가족불화	갈취, 탕진 우려
응답자 수 비율	74.0	14.2	7.8	4.0

다음으로 정기금 선호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 선호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으로 나타났다.

〈표 V-4〉 연령대별 정기금 선호 비율

(단위: 명, %)

연령대	응답자 수		
	일시금	정기금	정기금 선호 비율
20대	134	74	36
30대	156	77	33
40대	154	85	36
50대	215	187	47

주: Chi-Square 독립성 검정 p-value = 0.002

물론 기혼이 미혼에 비해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학력이 낮을수록 정기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나, 결혼여부와 학력이 연령에 의해 크게 영향 받는 요소

(〈표 V-5〉 참조)이므로 정기금에 대한 선호 정도는 연령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기타 성별, 세대주 여부, 거주지역 규모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V-5〉 연령별 · 결혼여부별 · 학력별 정기금 선호 비율 (단위: 명, %)

구분			일시금	정기금	정기금 선호 비율
연령	결혼 여부	학력			
20대	미혼	고졸	42	23	35
		대졸 이상	78	37	32
	기혼	대졸 이상	8	11	58
30대	미혼	고졸	14	6	30
		대졸 이상	24	11	31
	기혼	고졸	48	20	29
		대졸 이상	70	39	36
40대	기혼	고졸	82	48	37
		대졸 이상	67	32	32
50대	기혼	중졸	24	22	48
		고졸	146	134	48
		대졸 이상	43	30	41

2007년 시행한 AIG Survey Report의 인적사고 유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86%가 손해배상금을 일시금으로 선택했고, 정기금은 7%만 선택했으며, 나머지 7%는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합하여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금을 선택한 자들의 57%는 손해배상금을 전부 소진했고, 기타는 일부만 남아있다고 응답했다(일시금 선택자의 12%는 손해배상금의 75% 이상, 10%는 25% 미만, 9%는 25~50%, 7%는 50~75% 남아있다고 답함. 5%는 답변하지 않음).

다음은 가계소득의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남편과 살고 있는 젊은 여성이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가정하고²⁸⁾, 손해배상금을 일시금

과 정기금 중 어느 것으로 받기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앞선 조사와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즉, 27%의 응답자가 일시금을 선택하고, 73%는 구조화지급방식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구조화지급방식을 선택한 이유로 71%가 정기적인 소득원으로 사용하기 위함을, 19%는 재무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 응답했다. 기타로는 “지속적으로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다(5%), 자신 또는 가족의 재정적 의사결정과 계획을 믿지 못한다(3%), 정부의 보조로 생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1%)”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정기금의 활용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2. 정기금 운영방식

정기금 운영방식으로는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준비금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 손해보험회사의 연금을 이용하는 방법,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각각의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으나, 연금의 운용은 상당한 전문성과 인프라가 필요하므로 운영비용이 너무 커 현실적으로 어려운 대안이라 생각되어 다루지 않기로 하겠다.

28) 당신은 최근에 결혼한 22살 여성이다. 당신의 배우자는 건설현장에서 일한다. 당신은 첫 번째 아기를 석 달 후에 출산할 예정이다. 당신은 현재 직업을 갖고 있지 않고, 당신 배우자의 직업이 가족의 유일한 소득원이다. 당신 배우자는 비오는 날 발을 잘못 디더 15층 건물에서 떨어져 즉사했다. 회사는 이미지 손상을 염려하여 소송 대신 당신에게 250만 달러의 settlement를 제안했다. 향후 몇 개월간 소송으로 피곤한 절차를 고려하여 심사숙고 끝에 당신의 변호사는 settlement를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다.

가.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준비금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

현재의 우리나라 제도나 현실을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 또한 다른 방법들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새로운 상품을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집수수료 등의 부담이 없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이다.

현재의 제도 하에서 손해보험금은 비과세 대상이며, 지급준비금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손해보험금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수익자와 운영자인 손해보험회사에 과세할 근거가 없다는 장점도 있다. 즉, 별도의 세법 개정 없이도 세제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의 정기금지급법(Periodic Payment Settlement Act of 1982)이나 영국의 재무법(Finance Act 1995, Sec.142)에서처럼 신체적 상해나 질병에 대한 보상을 일시금 또는 정기금 형태로 받을 경우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문화하는 것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도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준비금 계정을 이용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예금자보호법”과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보호제도”를 통해 신용리스크의 대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지급방법이나 적용이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비자보호나 보험금지급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험업계, 소비자보호단체, 법조계 등 공청회를 통한 약관 또는 보험업법의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장기간에 걸친 보험금지급에 따른 금리위험의 가능성, 보상업무의 증가 등 배상책임의 장기화가 손해보험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연금을 취급하지 않는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할 것이다.

나. 손해보험회사의 연금을 이용하는 방법

현재 일부 손해보험회사는 연금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손해보험회사의 연금을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방법은 다양한 지급방법을 설계할 수 있고, 자사의 상품을 이용하므로 모집수수료가 거의 필요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손해보험회사는 세계적격 연금만을 취급할 수 있어 다양한 지급방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또는 시행령을 개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가해자의 손해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정기금의 수탁자가 되는 구조이므로 손해보험회사의 파산 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현재로는 예금자보호법 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즉, 신용리스크를 줄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용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보호제도를 손해보험회사가 인적사고에 대한 보상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연금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또는 예금자보호법의 특례로 영국의 경우처럼 책임준비금의 90%를 인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상당히 번거로운 논의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연금을 취급하지 않는 손해보험회사의 경우는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이나 타 손해보험회사의 연금을 구입해서 제공해야 하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결론적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준비금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과 그 형식이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여러 단점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다.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을 이용하는 방법

현재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는 다양한 형태의 연금을 취급할 수 있다. 따라서 손해보험회사가 생명보험회사의 일시납 즉시연금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정기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다양한 지급조건을 설계할 수 있으며 기금운용의 부담도 덜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연금을 취급하지 않는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자금운용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을 구입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배상책임을 가해자의 손해보험회사가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상의 문제이지 가해자 즉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준비금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과 형식이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지는 않은 경우이다.

둘째, 미국의 경우처럼 가해자 즉 손해보험회사가 생명보험회사 또는 기타 수탁회사에게 배상의무를 전가하는 계약을 맺는 경우이다.

미국의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줄이는 데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주(state) 보증기금이 주의거주자를 보호하지 않아 보험금의 손실이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과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보호제도 등이 전국적인 범위에서 적용되어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더불어 다수의 손해보험회사가 파산한 경험을 가진 미국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손해보험회사는 상대적으로 신용리스크가 작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처럼 배상의무를 전가하는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변호사제도나 중개인제도가 발전하지 않아 더욱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방법은 손해보험회사의 연금을 이용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수탁사(assignee) 또는 생명보험회사의 파산 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현재

로는 예금자보호법 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금자보호법이나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보호제도의 개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상당히 번거로운 논의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가지 고려할 부분은 생명보험회사의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집수당 등 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는 점이다. 마승렬(2010)은 확정기간형 즉시연금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생명보험회사별로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는 사업비율을 추정한 바 있는데, 만기 10년의 경우 5.37~7.7%, 만기 15년의 경우 5.52~9.02%, 만기 20년인 경우 5.82~9.08% 범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추정의 결과에 따르면 이 방법으로 인적사고 배상금을 정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해자의 손해보험회사나 피해자가 5% 이상의 사업비를 지불하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볼 때 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형식으로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을 이용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3. 관련법규 검토

가. 정기금지급 근거법

1) 합의의 경우

심각한 인적상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또는 그들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보상을 청구하게 된다. 이때 구조화지급방식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무적으로 일시금지급이 보편화 되어 있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기금 형식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민법 제725조, 종신정기금 계약).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정기금지급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여진다. 더욱이 자동차보험 표준보통약관 제15조(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2.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및 지급 (2)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⑦)에서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보험금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방법과 적용금리는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자동차사고 보상금의 경우는 현재 제도에서도 정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약관의 “별도로 정한 바”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고 개별회사 차원에서의 규정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현실이어서, 이를 구체화하여 약관에 첨가하거나 보험업법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 이외의 준사회보험 성격의 보험약관에도 정기금지급이 가능함과 그 지급방법 및 적용금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업계와 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2) 법에 의한 강제의 경우

정기금지급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더라도 정기금지급을 명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미성년 유가족이 있는 경우나 고령의 노부모가 있는 경우라면 유가족의 부양이라는 보상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정기금지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미 정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법원이 정기금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판례의 경우 피해자가 일시금을 원하는 경우 정기금을 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손해발생시기에 관하여 통설 및 판례가 불법행위사로 일관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기금의 법리적 논의는 손해의 변경

가능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확정된 손해에 대한 일시금의 분할지급이라는 논리에서의 정기금지급은 법리적인 논쟁의 여지가 적다. 우리나라와 같이 손해발생시기를 불법행위시로 일관하여 손해액을 확정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그 손해액의 지급에 있어서는 정기금을 강제(structured order)할 수 있는 수가 많이 있는 것은 이미 살펴본 바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은 우리나라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문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정기금지급이 심각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을 통하지 않고서도 정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약관을 개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약관의 경우는 보험회사와 가해자 사이의 계약이므로 약관을 개정하여 정기금을 강제화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보험업법의 개정을 통해 미성년 유자녀나 노부모가 있는 경우 정기금지급을 우선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 일시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법 제4편 보험편 제658조 [보험금액의 지급] 규정을 바꾸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 세제혜택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정기금지급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급자(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해서는 정기금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기금지급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정기금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 또는 주요국의 경우 보험금 일시금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다. 따라서 정기금 운영방식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준비금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정기금을 손해보험금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세법 개정 없이도 세제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손해보험회사의 연금이나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

는 경우에는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이자소득(보험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된다. 여기서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연금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다만 수급권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것이 비과세의 명분이 된다. 즉, 피해자는 보상금을 나누어 받는 것일 뿐이므로 이자소득 등이 과세의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우리나라도 도입이 필요한 부분이며 이미 보험금 일시금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으므로 제도의 도입에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기금지급기관에 대한 과세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이들 국가의 경우 운용기관과 정기금 수령자에 대해 면세를 허용하고 있고 이를 위한 법규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손해보험회사의 준비금계정을 이용하는 경우는 손금산입이 되므로 별도의 세제혜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손해보험회사의 장기보험이나 생명보험회사의 연금 등을 이용하여 정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수입에 대한 교육세를 면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표 V-6〉 보험관련 세제

관련 세제	주요 내용	근거법
법인세법상 준비금의 손금산입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30조
보험료 수입에 대한 교육세	보험료수입 등의 0.5%	교육세법 제3조, 제5조

다. 적용이율

정기금 지급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중의 하나는 적용이율에 관한 것이다. 단일이율을 사용할 것인지 변동이율을 사용할 것인지, 이율을 정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차이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율적용방식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실수익을 일시금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 지급기준은 라이프니츠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배상법에서는 호프만식을 사용하고 있다. 정기금의 가치를 일시금으로 계산할 때는 호프만식이 중간이자를 단리로 계산하는 방식이므로 그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게 되는 라이프니츠식에 비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시금을 재원으로 하여 정기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호프만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라이프니츠식으로 지급하는 것에 비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정기금지급에 라이프니츠식을 적용할 것인지 호프만식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어떤 이율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보험업계, 소비자보호단체, 법조계 등의 의견 수렴과 논의를 위한 공청회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